

협력회사 행동규범

제1장 개요

제1조(목적)

- ① 글로벌 에너지/자원 전문 수송선사인 대한해운은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협력회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과를 이루며 동반성장 하고자 본 행동규범을 규정하였습니다.
- ② 본 행동규범은 모든 협력회사의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경영, 인권경영, 안전경영, 환경경영 총 4개의 영역에서 최선의 운영 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③ 대한해운은 협력회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협력회사가 존중 받을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대한해운은 협력회사들과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본 행동규범은 대한해운에 재화와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 등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공급망 내 법인과 개인사업자 및 그에 속한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 ②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공급망 전반에 걸친 변화로 받아들이고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사 전반이 본 행동규범을 실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제3조(협력회사의 책임과 역할)

- ① 대한해운의 협력회사는 경영 의사결정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본 행동규범은 협력회사가 행동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한해운은 협력회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시하기 위하여 협력회사를 방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협력회사 점검 및 실사는 대한해운 또는 대한해운의 위탁을 받은 제3의 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점검 및 실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해운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된 이슈 및 리스크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협력회사는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에 대해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 행동규범은 모든 의무 사항을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거래 환경 및 공급망 구축과 환경 변화에 따라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 ④ 협력회사와 계약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회사는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고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협력회사 행동규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윤리 경영

제4조(반부패)

- ① 협력회사는 모든 계약 상대방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관련자에게 또는 그런 관련자로부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 등 유·무형의 재산상 이득 또는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아서서는 안 됩니다.
- ③ 협력회사는 제3자를 이용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거래 청렴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④ 협력회사는 거래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위반자에게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반부패 관련 법규의 준수를 항상 실천하여야 합니다.

제5조(정보 공개)

- ① 협력회사는 정보 공개 관련법과 규정, 업계 관행에 근거하여 경영활동과 성과, 재무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개하여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주주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반 법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6조(공정거래)

- ①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및 현지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제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협력회사는 경쟁사의 가격, 제품, 판매 조건, 수익 또는 마진, 시장 점유율, 유통 방식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담합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식 또는 비공식 협정이나 협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7조(지적재산권 보호)

- ① 협력회사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 실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 및 규정 마련 등 자체적으로도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 ① 협력회사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인 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등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취급 및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제3장 인권 경영

제9조(자발적 근로)

- ①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강제 노동, 착취 노동 및 비자발적인 노동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이나 여권, 취업 비자 등의 양도를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협력회사는 반드시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 조건을 문서화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채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0조(근로시간)

- ① 협력회사는 근로 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규정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1조(아동·미성년 근로자 보호)

- ① 협력회사는 어떠한 제조 공정에도 아동 근로자를 고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동은 15 세,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 고용할 수는 있으나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초과근무, 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임금 및 복리후생)

- ①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인 최저 임금, 초과 근무시간 보상,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기준은 급여내역서나 유사한 서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는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내역서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13조(인도적 대우)

- ①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제한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14조(차별 금지)

- ① 협력회사는 채용, 승진, 보상, 배치, 복리후생, 교육 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성향,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결혼 여부 등에 따른 불법적인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안전 경영

제15조(산업 안전)

①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잠재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방지하는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조치는 설계, 엔지니어링, 예방정비 등을 통한 공학적 개선, 안전한 작업절차 마련, 지속적인 안전훈련 및 교육, 적합한 보호구 지급 등이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16조(비상사태 대비)

- ① 협력회사는 자연재해, 감염병, 업무현장 사고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대응 절차를 갖추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비상사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통하여 근로자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화재, 사고 등에 대한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제17조(산업재해 및 질병관리)

- ① 협력회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 위한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육체노동 및 작업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적절한 휴식 제공, 인력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체적 이상에 대한 보고를 장려하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③ 협력회사는 국가별 보건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이 요구되는 경우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8조(안전보건교육)

- ① 협력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사업장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제5장 환경 경영

제19조(환경 법규 준수)

① 협력회사는 위험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폐기물 등 환경 오염을 규제하는 제반 환경 법규 및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등 환경 관련 국제조약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0조(환경 인허가 및 보고)

① 협력회사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필수 환경인 허가사항을 취득, 유지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항상 반영해야 하며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1조(환경 오염 방지)

- ① 협력회사는 생산·정비 공정 및 시설의 효율화,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으로 폐수와 폐기물 등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오염물이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폐기물, 폐수 등에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22조(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 ① 협력회사는 단계적으로 전사 및 사업장 단위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 ② 협력회사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 칙

- ① 본 규범은 2025년 7월 24일부터 제정시행한다.

별첨. 협력회사 행동규범 서약서

협력회사 행동규범 서약서

당사는 대한해운 당사는 대한해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해운")와의 거래 및 협력관계에 있어 「협력회사 행동규범」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대한해운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윤리경영, 인권경영, 안전경영 및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패방지,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 기업윤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불공정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강제노동·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 및 적정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 당사는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보호 활동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7. 당사는 대한해운이 협력회사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점검·실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행동규범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대한해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선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9. 당사는 본 행동규범의 취지를 하위 협력사 및 공급업체에도 공유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대한해운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